

「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과장)

1. 제안이유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의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종전의 “설치할 경우에는” 을 “설치하여야 하며”로 개정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개정에 따라

‘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’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자

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,

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